

회원 및 회비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양서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 회비 체계 및 납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회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회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양 서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종류 및 정의)

①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납부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는 회원

나. **평생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본 규정 **제3조 3항 또는 제4조**에 명시된 평생회비를 일시(또는 분할) 납부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은 회원

② **(회원의 등급)** 제1항의 회원은 협회 활동 경력 및 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받으며, 등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청년작가"**: **40세 이하**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일반작가"**: **41세 이상** 작가로서 협회의 이념과 목적에 동의하는 자

다. **"추천작가"**: 《추천·초대작가 선임 규칙》에 의거 **3년 이상 청년작가 혹은 일반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

라. **"초대작가"**: 청년작가, 일반작가 혹은 추천작가로 3년 이상으로 활동하고 협회 수상작 기준 입상 점수 **15점 이상**을 취득한 이후 추가 2회 이상 출품하신 자 중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자

마. **"임원"**: 초대작가 중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별도의 활동 기준(예: 지난 3년간 협회 주요 행사에 5회 이상 참여, 특정 위원회 활동 등)**을 충족하고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임명된 자

제3조 (회비 및 등록비 기준)**① 연회비**

구분	연회비	비고
청년작가	3만원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일반작가	5만원	가입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추천작가	8만원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초대작가	10만원	승급 시 등록비 별도 납부
임원	20만원	임원취임 시 발전기금 납부

② 등록비 (가입 및 승급 심사 시)

구분	등록비	비고
청년작가	1만원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일반작가	2만원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
추천작가 승급	3만원	일반회원에서 승급 시 납부
초대작가 승급	5만원	추천작가에서 승급 시 납부

③ 평생회원

가. (자격) 본회의 정회원(일반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은 누구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작가'는 예외)

나. (회비) 평생회비는 신청 당시 회원 등급별 연회비(제3조 제1항)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예: 일반작가 50만원, 추천작가 80만원, 초대작가 100만원 등)

다. (임원 특례) 제4조에 따라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한 임원은 본 조의 평생회비를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평생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라. (혜택 및 자격 유지) 평생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납부 시점의 등급이나 향후 승급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회원' 자격을 영구히 유지하며, 이후 '연회비'(제3조 제1항)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마. (승급 시 의무) 단, '라' 항의 연회비 면제 혜택과 별개로, 평생회원이 상위 자격으로 승급할 경우 '승급 등록비'(제3조 제2항)는 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 발전기금 및 혜택)

- ① 임원으로 취임하는 정회원(초대작가 중)은 협회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2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발전기금은 최대 20개월까지 CMS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 2백만원을 완납한 정회원은 '**평생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영구히 면제받는다.**
- ④ 제3조 3항에 따라 이미 평생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제1항의 발전기금 2백만원에서 **기(既)납부한 평생회비를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 납부 기간 및 자격 관리)

- ① 연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회비 미납에 따른 조치

가. 1차 미납 (당해 연도 연회비 미납 시): 미납 사실 통보 후, 회원 활동에 필요한 권한(예: 웹사이트 접속, 특정 행사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나. 2차 미납 (연속 2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회원 혜택 및 권한이 중단됩니다.

다. 3차 미납 (연속 3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상실(제명)됩니다.

③ 미납 연회비 완납 후 기존 자격 복원 가능.

④ 특별한 사유 시 이사회 승인으로 납부 유예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제6조 (출품비 규정)

회원 구분	출품비 (작품 1점)	2 ~ 9번째 작품
청년작가 및 일반작가	6만원	5만원
추천작가	10만원	9만원
초대작가	20만원	19만원

※ 2번째 작품부터 1만원씩 할인하여 적용하며, 표구비는 제8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7조 (개인전 출품비 규정)

출품작품 수	표준가 (비회원 적용)	회원가 (정회원 적용)
10~19점 출품	작품당 18만원	작품당 16만원
20~29점 출품	작품당 16만원	작품당 14만원
30~39점 출품	작품당 14만원	작품당 12만원
40점 이상 출품	작품당 12만원	작품당 10만원

※ 개인전 출품자격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출품하실 작품의 수량과 작품성을 운영위원회와 이사장의 책임 감수 하에 접수 가능하며, 표구비는 제8조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8조 (표구비 규정)

- ① 입선 이상 작품에 대해 표구비를 부과하며, 표구는 **협회가 정한 표준 옵션 및 가격**으로 진행한다.
- ②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구 서비스는 기계배접 방식이 아닌 **손배접 방식**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
- ③ 표구비는 **실제 표구 원가를 기반**으로 책정하며,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④ 작품 규격별 표구비는 다음과 같다.

작품 규격	표준가 (비회원 적용)	회원가 (정회원 적용)
반절지 (35×135cm)	작품당 8만원	작품당 6만원
전지 (70×135cm)	작품당 10만원	작품당 8만원
국전지 (70×200cm)	작품당 12만원	작품당 10만원

※ 회원이 표구 대신 액자나 판넬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및 협회 승인 후** 실비 정산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시회 이후 작품 수거는 원칙적으로 출품 작가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한다.

제9조 (도록비 규정)

- ① 전시 참여한 작가에게는 도록 1권 무료 제공한다.
- ② 추가 구매 혹은 전시 참여 정회원이 아닌 경우

구분	도록 추가 구매 (1권당)
회원	2만원
비회원	3만원

제10조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가 면제된다.

② 전시에 40점 이상 작품을 출품한 작가에게는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 (최초 혜택) 개인 홈페이지 제작비 및 1차 연도 유지보수비를 전액 면제한다.

나. (지속 혜택)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만 납부**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전시에 3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 면제되며, 해당 연도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④ 전시에 20점 이상 출품하신 작가에게는 초기 구축비의 50%를 할인한다.

구분	개인 홈페이지 제작 (1인)
회원	초기 구축비 600,000원 연간 유지보수비 200,000원
비회원	초기 구축비 700,000원 연간 유지보수비 300,000원

제10조의 2 (단체 홈페이지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 규정)

① 본 조는 2인 이상의 작가(양인전, 연합전, 단체전)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의 비용을 규정한다.

② (회원가 적용 기준) 참여 작가 전원이 본회의 정회원일 경우 회원가를 적용한다. 참여 작가 중 비회원(또는 자격 정지 회원)이 1명이라도 포함될 경우 표준가를 적용한다.

③ (회원가) 회원가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참여 인원)	초기 구축비	연간 유지보수비

양인전 (2인)	1,000,000원	350,000원
연합전 (3인)	1,350,000원	450,000원
연합전 (4인)	1,600,000원	550,000원
연합전 (5인)	1,850,000원	650,000원
단체전 (6인)	2,100,000원	750,000원
단체전 (7인)	2,300,000원	850,000원
단체전 (8인)	2,500,000원	950,000원
단체전 (9인)	2,700,000원	1,050,000원
단체전 (10인)	2,900,000원	1,150,000원
단체전 (11인~15인)	3,200,000원	1,200,000원
단체전 (16인~20인)	3,800,000원	1,500,000원
단체전 (21인 이상)	별도 견적	별도 견적

④ (표준가) 표준가(비회원 포함) 기준 초기 구축비 및 연간 유지보수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참여 인원)	초기 구축비	연간 유지보수비
양인전 (2인)	1,200,000원	500,000원
연합전 (3인)	1,600,000원	650,000원
연합전 (4인)	1,900,000원	750,000원
연합전 (5인)	2,200,000원	900,000원
단체전 (6인)	2,500,000원	1,000,000원
단체전 (7인)	2,700,000원	1,100,000원
단체전 (8인)	2,900,000원	1,200,000원
단체전 (9인)	3,100,000원	1,300,000원
단체전 (10인)	3,300,000원	1,400,000원
단체전 (11인~15인)	3,800,000원	1,600,000원

단체전 (16인~20인)	4,500,000원	2,000,000원
단체전 (21인 이상)	별도 견적	별도 견적

⑤ (추가 옵션 및 할인) 다국어 지원, 3D 가상 전시관, 작품 판매 기능 등 추가 옵션 비용과 조기 계약, 장기 계약 등에 따른 할인 정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⑥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10조(작가 개인 홈페이지) ②항, ③항, ④항에 명시된 전시 출품 수량에 따른 구축비 면제 및 할인 혜택은 개인전 홈페이지에 한해 적용되며, 본 조의 단체 홈페이지에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납부 방법)

- ① 모든 비용은 온라인 납부(계좌이체, CMS 출금 등)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회원 기본 혜택)

① 정회원 공통 혜택

- 가. 전시회 참가할 경우 도록 1권 무료 제공
- 나. 출품비, 표구비, 도록비 할인가 적용
-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실 경우 연회비 면제

② 추천작가 이상 추가 혜택

- 가. 초대작가 후보 등록 기회
-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③ 초대작가 이상 추가 혜택

- 가. 상임이사 후보 등록 기회
-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 다. 요건 충족시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 선별 지원

④ 임원 혜택

- 가.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기회
- 나. 특별 전시회 및 해외 교류전 참가 우선권
- 다. 작가 개인 홈페이지 초기 구축비와 연간 유지보수비 1년 면제
- 라. 초대작가전 출품비 5% 할인

제13조 (고령 회원 혜택)

만 7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회원 중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협회 주요 전시회 5회 이상 참여
- ② 협회 주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강연 3회 이상
- ③ 협회 사업 기획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등

이때 공로 심의는 별도로 마련된 '공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공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칙 (附則) <2026. 1. 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 최종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